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 신설〉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56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 신설	2
2. 개정안 부칙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3. 31.

3. 회 부 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 신설(안 제8조제6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 부과를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 ⑤ (생략) <u><신설></u>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상담,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u>⑥</u> (생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음.¹⁾
-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선정되는 경우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²⁾
- 교육부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2022년 10월 수립하여 기초학력 보장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교내 학습지원교육의 경우 수업 중 협력수업 또는 분리지도, 방과후 및 방학중 교과 보충지도가 실시되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³⁾에서 초기 문해력·수리력 지원, 학습상담, 학습전

1)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시·도교육청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2012년에 도입되었고, 전문진단도구를 활용해 의뢰학생의 학습저해요인을 심층분석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단결과를 안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선정된 학생에게 실제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지원시 해당 학생의 학습저해요인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는 특수요인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 에 대한 학교 단위

략 상담, 난독·난산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센터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병원, 심리상담센터, 언어치료 센터 등)과 연계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4)

- 한편, 학습지원교육의 경우 수업 중 협력수업을 제외하고는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는데5),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일)에서도 보호자

지원의 한계극복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통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전국 시도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현황('26년 기준)](교육부 제출)

시·도	설치 현황(개소)			시·도	설치 현황(개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계		교육청	교육지원청	계
서울	1	11	12	강원	1	18	19
부산	1	5	6	충북	1	8	9
대구	1	5	6	충남	0	14	14
인천	1	5	6	전북	1	14	15
광주	0	2	2	전남	0	22	22
대전	1	2	3	경북	1	22	23
울산	1	2	3	경남	1	18	19
세종	1	0	1	제주	1	2	3
경기	1	25	26	합계	14	175	189

4) 학습지원교육의 내용 및 실시 방식, 1인당 비용 소요(교육부 제출)

구분	학습지원교육의 내용 및 실시 방식	학습지원대상학생 1인당 소요 예산* (전국 평균)
교내	▲ 방과후 소규모 교과보충지도, ▲ 방과후·방학중 1:1 멘토링 ▲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등	585천원
교외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 진단·중재 프로그램(초기 문해력·수리력 지원, 학습상담, 학습전략 상담, 난독·난산 지원 등) ▲ 외부 전문기관(병원, 심리상담센터, 언어치료 센터 등) 연계 지원 등	1,227천원

※ 교내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 교외 프로그램 중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무료로 운영되며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은 학생 1인당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외부 전문기관 이용에 따른 보호자의 실제 부담액은 학생의 상황, 지역·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5) 교육부는 수업 중 실시하는 협력수업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에서 별도의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함.

의 비동의로 인한 학습지원교육 위축 문제 지적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부과 관련 법령 개정 요구도 있었음.

□ 이와 관련 개정안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선언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현재 「교육기본법」에서는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⁶⁾,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⁷⁾⁸⁾

6)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7)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교육부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학습지원교육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교사의 관찰 등

이와 같이 현행법에 이미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들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기초학력 보장법」에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직접 규정하더라도 선언적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 없이 보호자에게 협조의무만 강조할 경우, 학습지원교육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⁹⁾을 1명 이상 지정·운영 중이거나 대다수가 교과·담임교사를 겸임하여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부가 제출한 보호자의 미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진단검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및 ‘외부 기관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이 있는바, 기초학력 보장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정에 따른 낙인효과’, ‘자존감 및 학습의욕 저하’, ‘진단·이력 관리에 따른 불이익’ 등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

9) 학습지원 담당교원 현황 : '26년 13,016명(학교수 11,968교 대비 108.8% 지정)

이 공통적인 보호자 미동의 사유로 나타났음. 이는 학습지원대상 선정이나 지원교육 이수 이력이 향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보호자 미동의 사유(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결과)]

구분	보호자(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
교내	▲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낙인 효과 우려 ▲ 사교육 프로그램 의존 ▲ 학생 개인 일정으로 인한 학습지원교육 시간 조정의 어려움 ▲ 정규수업 이후 추가적 학습으로 인한 자녀의 피로감 증가 ▲ 자존감·학습의욕 저하 우려 등
교외	▲ 외부기관 자녀 동행 부담(보호자의 물리적·시간적 지원의 어려움) ▲ 진단검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 외부 기관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 낙인 우려(진단 및 중재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 불안) ▲ 사교육 프로그램과의 시간대 중복 ▲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담 ▲ 학부모의 주관적인 판단(교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함)

자료 : 교육부 제출

현행법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¹⁰⁾,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사실이나 학습지원교육 참여

10)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력의 관리·보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보호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기에 앞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이력이 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정보 관리·보호 방안과 낙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아래와 같은 의견 제시가 있었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교육부>

-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에 대해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보호자의 미동의 또는 협조 부족으로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¹¹⁾
- 따라서 학생의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지원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지원교육에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는 일반적 책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한 학습지원교육의 범위는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교내 학습지원교육’과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별도 프로그램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시·도교육청>

- (경기-이견없음)
 -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기대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학습지원대상학생 보호자의 학습지원교육 비동의율(울산교육청, '24년): 초 39.4%, 중 23.6%, 고 70.3%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률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 ☐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성격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임.

1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86